

제 5장 폐기물소각과 대기오염처리기술

1. 폐기물처리

1-1. 개요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되는데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 폐기물외의 모든 폐기물을 지칭하는 것이며, ‘사업장폐기물’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그 외에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여기에서 ‘지정 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 폐기물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대표적인 지정 폐기물로서는 폐산, 폐알칼리, 폐유기용제, 폐합성 고분자화합물, 폐석면, 광재, 분진, 폐주물사, 소각 잔재물, 고화처리물, 폐축매, 폐흡착제, 폐농약, PCB 함유 폐기물과 의료폐기물 등이 있다.

상기의 설명을 토대로 현재 국내에서 분류하고 있는 폐기물 분류체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생활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이외의 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 공장 배출시설 폐기물, 지정폐기물(폐산 · 폐알칼리 등), 1일 평균 300kg 이상의 폐기물, 일련의 공사 · 작업등으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폐기물정책 수립을 위하여 1996년 처음으로 폐기물 센서스 사업을 실시하였다. 1995년 기본설계를 마치고 1996년 4월부터 1997년 8월까지 전국 1만 가구를

대상으로 실제로 실시한 폐기물 센서스의 결과, 지역별 · 종류별 · 성상별로 보다 정확한 폐기물 통계자료를 얻게 되었으며, 앞으로 5년 주기로 지속 조사하게 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적정화와 효율화를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

아울러 폐기물관련 법령도 계속적으로 보완하여 1999년도에는 폐기물관리법에 폐기물의 처리증명제 및 폐기물처리업자의 방치폐기물처리 이행 보증제 등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굵직한 제도를 새로이 도입함과 동시에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신설하고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기준을 강화하였다.

이외에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매년 97만점이 발생하는 폐가구류에 의한 매립지난 등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목재수입을 절감하기 위하여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불박이장 등 수납공간의 설치 권장제가 신설되었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주민지원기금 조성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함과 동시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김포 쓰레기 매립지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국내 폐기물관리법제의 발전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폐기물관리법제는 「2원화」→「1원화」→「세분화」의 단계를 밟아 왔다. 폐기물 문제가 그다지 심각하지 않았던 1980년대 중반 이전에는 생활 폐기물은 ‘오물청소법’, 사업장 폐기물은 ‘환경보전법’에 의하여 2원적으로 관리되어 왔으나 1986년 ‘폐기물관리법’이 제정되면서 관리체계가 통합되어 일원화된 이후에 ‘폐기물관리법’이 다시 재활용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을 위하여 분법화됨에 따라 법률체계가 세분화 및 전문화가 되었다.

개략적으로 시대별 폐기물관리법제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 오물청소법 시대(1961~1977)
- 환경보전법 시대(1978~1986)
- 폐기물관리법 시대(1986~1992)
- 분법화 시대(1993~현재)

자료제공 : 환경보전협회 환경연수처
다음호에 계속...